

- 2025. 1. ~ 2025. 12. -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026.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통, 변화, 창조

목 차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개요	1
---------------------------	---

II. 고충민원 분야 활동실적	4
------------------------	---

1. 접수 및 처리현황	4
--------------------	---

2. 고충민원 처리결과	6
--------------------	---

3. 고충민원 상담실적	32
--------------------	----

III. 기타 활동실적	105
--------------------	-----

1. 제도개선 권고	105
------------------	-----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개요

□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2조 및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설치·운영

□ 구성 및 임기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각 1명 (계 : 2명)
 - ▶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내 구성 가능
- 임기 : 4년
 - 위원장(위원) : ‘25. 7. 14. ~ ‘29. 7. 13.(‘22. 8. 1. ~ ‘26. 7. 31.)
 - ▶ 조례 제5조 제1항

□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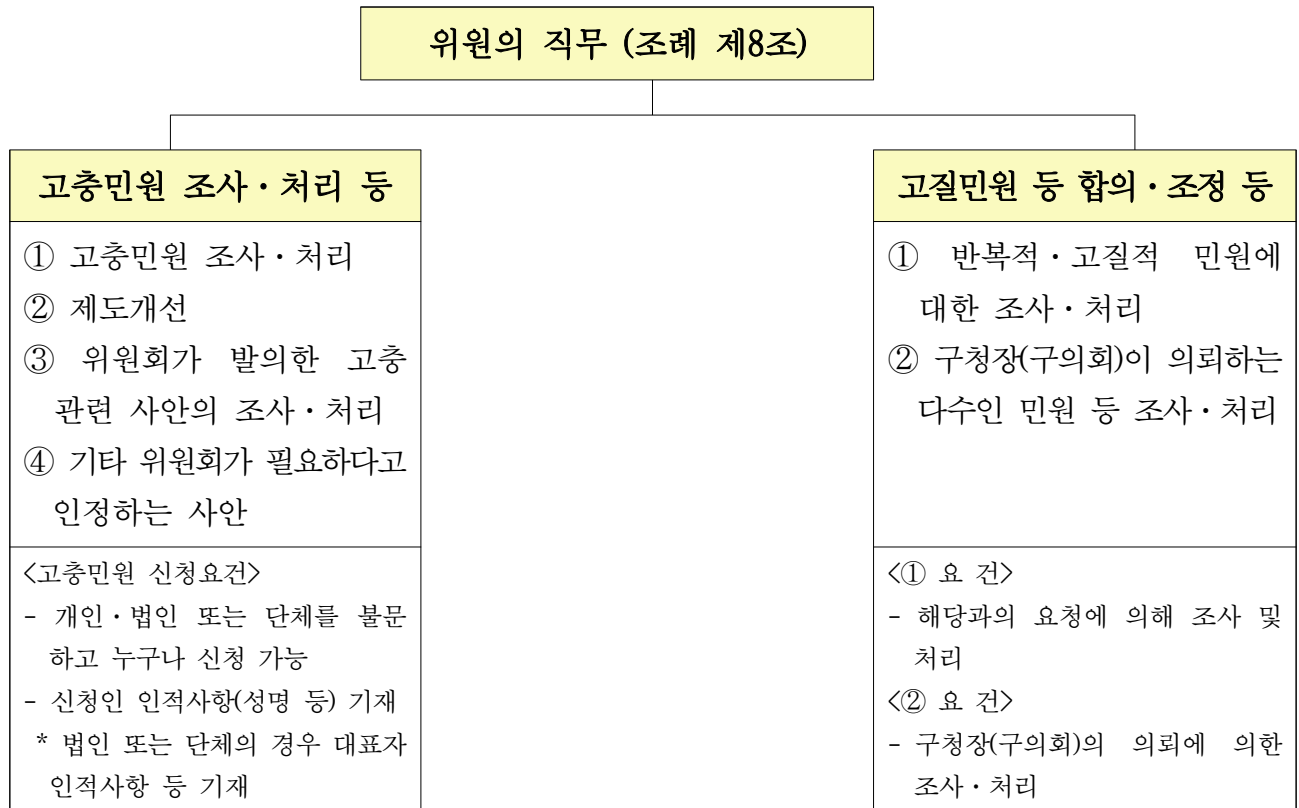
-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심의·의결은 합의제로 운영
 - ▶ 조례 제9조 및 제11조 제2항

□ 적용 범위(조사 대상)

- 대구 북구 본청 및 직속 기관(보건소 등), 동 행정복지센터
 - ▶ 조례 제2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기본 직무

- 고충민원¹⁾의 조사·처리, 제도개선 및 반복적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 업무 수행



□ 기타 사항

- 구민고충처리위원이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회 상담을 금년도 시범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부터 중지한 순회 상담을 읍내동(2025. 10. 21.) 및 산격3동(2025. 10. 31.)에서 각 1회 시범 실시
- 민원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상담을 수시 실시 (년중)

1) 대구 북구 및 대구 북구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례 제2조 제3호)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가. 운영상황 보고

-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운영 상황(활동 실적)을 2개월 이내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보고)
- ▶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나. 운영상황의 공표

-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운영사항을 다음해 3월 말까지 대구 북구 누리집에 공표
- 운영상황의 공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 보호 조치

다. 공표대상

-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사항
- 위원회의 시정권고·감사 의뢰 또는 의견표명한 내용
- 위원회의 시정권고·감사 의뢰 또는 의견표명한 내용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제도개선 포함)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위법·부당한 처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여 2025년도 감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음 (조례 제25조)

II

고충민원 분야 활동실적

1.

접수 및 처리현황

□ 고충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기간

(2025. 1.~2025. 12.)

합 계	접수건수(단위 :건)		처리 기간(단위 : 일)		
	방 문	FAX 등	평 균	최대	최소
8	8	-	8.75	19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산정

□ 접수현황

(단위 : 건)

계	도로	교통	축산	건축	개발행위	기타
8	2	1	1	1	1	2

□ 처리현황

(단위 : 건)

접수건수	계	직접조사	이송	비 고
8	8	4	4	-

□ 처리결과

(단위 : 건)

계	해 결	심의안내	이송 및 안내	비 고
8	3	1	4	이송 및 안내한 4건의 고충민원은 조례 제17조에 해당

□ 분야별 고충민원 상담 건수

(단위 : 건)

분 야 건 수	계	주택 건축	건설 교통	환경	공원 녹지	도시	복지	농업	기타
54	54	20	9	5	3	2	2	2	11

□ 분야별 제도개선

(단위 : 건)

분 야 건 수	계	교통	기 타	비 고
1	1	1	-	-

□ 2025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계 : 10회

- 인터넷 홍보(홈페이지 등) : 5회
- 현수막 및 전자게시판 : 3회
- 통장 및 관변단체 회의 : 2회

2. 고충민원 처리결과

□ 조치유형 ☞ 해결 : 3건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내용	비 고
1	- 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00로0길 0, 000동 0000호, 000 (19일)	* 처리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2	- 제목 : 국유재산(구거 부지) 유상 사용허가 철회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2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로 000, 000동 000호 000(16일)	* 처리내용 : 붙임 2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3	- 제목 : 물고임 현상 발생 보도 (인도)에 대한 보수공사 실시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3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동 0000-00, 000(9일)	* 처리내용 : 붙임 3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붙임 1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 2025-제0호, 민원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00로0길 0, 000동 0000호 (00동, 000000000000단지)
피신청인	0000과장	접수일	2025. 0. 00.

1. 신청 원인

- 신청인의 소유한 대구 북구 00000길 00(00동 000) 소재 지상0층 건축물 중 지상1층 000.00㎡(이하 ‘이 민원 건축물’ 이라 함)를 신청인과 0000. 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이하 ‘이 민원 영업허가’ 라 함)를 받은 임차인(이하 ‘임차인 1’ 이라 함)이 신청인에게 임차료(월차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0000. 0. 00. 임차인 1을 상대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민원 건축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은 0000. 00. 00.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민원 건축물을 0000. 00. 00.까지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음에도 임차인 1이 그 조정이 성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0000. 0. 00. 새로운 임차인(이하 ‘임차인 2’ 라 함)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는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0000과장(이하 ‘피신청인’ 이라 함)에게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처리된 이 민원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임차인 2에게 새로이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이 민원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0000. 0. 00. 임차인 1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고, 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1은 0000. 0. 피신청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임차인 1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피신청인은 임차인 1이 제출한 신고서를 수리하고 이 민원 건축물에 이 민원 영업허가를 한 후 임차인 1에게 0000. 0. 00. 허가증(상호 : 0000)을 발급(교부)한 바 있음.

나. 위 ‘가’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1이 0000. 00. 00.부터 신청인에게 임차료(월차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0000. 0. 00. 대구지방법원에 임차인 1을 상대방으로 이 민원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사건번호 : 0000머000, 사건명 : 건물 인도)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은 0000. 00. 00.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서에 첨부한 조정 조서와 같이 이해당사자(신청인과 임차인 1)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다. 그러나 위 ‘나’와 같이 조정 성립된 사항과 달리 임차인 1이 이 민원 건축물 내 소유 물건(내부 집기 등)을 처리한 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을 0000. 00. 00.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임차인 1의 소유 물건을 처리한 후 임차인 2와 0000. 0. 00.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임.

라. 한편, 위 ‘다’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은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이 민원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 1이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차인 2에게 영업허가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음.

* 신청인은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처리된 이 민원 영업허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인도와 관련한 신청인과 임차인 1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직권 취소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

마. 이에 신청인은 2025. 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건축물에 처리된 이 민원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0000과 담당 공무원은 이 민원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

1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차에 걸쳐 설득한 결과, 임차인 1이 2025. 0. 00. 피신청인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 및 그 제출된 신고서를 피신청인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3. 결론(조치의견) : 해결

-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리 위원회의 민원조사를 마무리함이 타당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0. 00.

< 붙임 2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2025-제0호, 국유재산(구거 부지) 유상 사용허가 철회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로 000, 000동 000호 (00동, 0000000)
피신청인	0000과장	접수일	2025. 0. 0.

1. 신청 원인

-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 업무(사용료의 부과·징수 등)를 위임 받은 0000과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이 0000. 00. 00.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대구 북구 00동 000의 토지 중 그 일부의 토지[같은 동 000-00의 토지 동측에 위치한 지목이 구거인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소유) 000㎡ 중 00㎡를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상 사용허가(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후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2026년도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0000. 00. 0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 그 사용 허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매년 사용료를 징수(같은 법 제32조)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0000. 0. 00.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를 중지【이유 : 허가 시 사용 목적(용도)이 상실】하고, 그 사용허가의 중지예 따라 2026년부터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0000과-00000(2025. 0. 00.)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3. 결론(조치의견) : 해결

-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민원조사를 마무리함이 타당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25. 0. 00.

< 붙임 3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민원 번호 : 2025-제0호, 민원 제목 : 물고임 현상 발생 보도(인도)에 대한 보수공사 실시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동 0000-00
피신청인	00과장	접수일	2025. 00. 00.

1. 신청 원인

- 신청인이 소유한 대구 북구 읍내동 0000-00 소재 건축물의 남측에 위치한 00로의 보도(인도) 일부가 인접한 같은 동 0000-00 소재 건축물 측에 설치된 보도와의 고저차로 인한 물고임(빗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의 대지에서 보도로의 통행(보행)에 심한 불편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대구 북구 00과장(이하 ‘피신청인’ 이라 함)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보도블럭의 구간(신청인의 소유 대지 앞에 시공된 보도블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 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니 주민들의 통행(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속히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인접하여 시공된 보도블럭(같은 동 0000-00의 대지 앞에 시공된 보도블럭)을 위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가 물고임 현상 방지를 위해 무단으로 높혀 시공함에 따라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이 민원 보도블럭 구간의 면적은 우수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약 0㎡ 정도임.

나. 피신청인은 위 ‘가’와 같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그 보수공사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인과의 사전 협의를 한 후 그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5. 00. 00. 이전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음.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00과-00000(2025. 00. 00.)]의 참조 및 이 민원 보도블럭의 구간에 대한 보수 방안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사항

3. 결론(조치의견) : 해결

-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리 위원회의 민원 조사를 마무리함이 타당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00. 0.

□ 조치유형 ☞ 심의안내 : 1건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 고
1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관리를 위한 진입로(통행로) 등 설치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0로 000 000000@ 000동 0000호, 000(10일)	* 처리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이	하	여	백

< 붙임 1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2025-제0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관리를 위한 진입로(통행로) 등 설치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0로 000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
피신청인	0000과장	접수일	2025. 00. 00.

1. 신청취지

- 신청인이 소유한 대구 북구 00동 산00-0의 임야(같은 동 산00-0으로 분할된 이후 면적 00,000㎡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함)는 0000. 0. 00. 대구 북구에서 이 민원 임야의 일부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²⁾)을 결정 고시하기 전 지적법상 도로(국토교통부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같은 동 000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함)에 접하고 있었으나, 대구 북구 0000과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이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 공공공지를 조성³⁾함에 따라 이 민원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임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소유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재산 가치의 하락과 함께 신청인이 사실상 이 민원 임야(산림)를 관리(간벌, 가지 치기 등)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공익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한 신청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3) 같은 동 산 00-0의 임야를 신청인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피신청인이 목재 데크 등 시설의 설치를 완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너비 약 3~4m의 차량 진입로(통행로) 등을 설치⁴⁾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신청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중 그 일부의 임야(같은 동 산00-0으로 분할된 임야)가 포함된 일원의 필지를 대상으로 000 공공공지의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입안 방침 결정(0000. . 00)】한 후 같은 날 신청 외 0000과장에게 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의 입안을 요청하였고, 신청 외 0000과장은 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련 절차(대구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0000. 0. 0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하였으며,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당초 이 민원 도로에 접한 이 민원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임야)가 된 것임.

※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한 이후 피신청인은 000 공공공지 조성 사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조성 사업에 따라 이 민원 임야의 경계선과 공공공지의 경계선(같은 동 산00-0) 측에 목재 데크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주민들이 산책로 등으로 이용 중에 있음.

- 2) 그러나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민원 임야 중 그 일부의 임야(같은 동 산00-0)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 당초 이 민원 도로에 접한 이 민원 임야가 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이후에도 도로에 접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도로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다고 판단됨.

4)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내 산책로로 이용 중인 공공공지를 통해 이 민원 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작업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너비 약 3~4m 차량 진입로(통행로)를 설치하고, 이 민원 임야에 진입한 차량이 이 민원 임야에서 회전하여 나갈 수 있는 임도(林道)를 설치

3) 한편, 신청 외 0000과장은 0000. 0. 00. 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반인에게 열람공고(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0000-000호)를 하면서 그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신청 외 0000과장이 정한 열람 기간【0000. 0. 00.~0000. 0. 00.(토·공휴일 제외 21일간)】내 피신청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 방안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신청인이 도로의 신설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어렵고(사유: 지목이 임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종류 제2호(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나)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제2호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이 공공공지의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사면을 통해 이 민원 임야에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 진입로(통행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1) 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이 협의 취득(0000. 0.)한 공공공지(같은 동 산00-0)의 경사면을 통해 이 민원 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작업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통행로)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임야에서 분할된 공공공지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이 해당 토지(임야)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차량 진입로를 포함)의 설치 허용되지 아니함.

3) 즉,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철도, 도로 및 광장, 수도 및 하수도, 전기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 또는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적 또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차량 진입로(통행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이 민원 임야에 진입한 작업 차량이 이 민원 임야에서 회전하여 나갈 수 있는 임도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나, 피신청인이 조성 사업을 완료한 공공공지에 차량 진입로(통행로)의 설치하는 불가하므로, 그 차량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임도의 행위 허가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불필요

3. 결론(조치의견) : 안내

○ 위 ‘2의 가 및 나’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자 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 조치유형 ☞ 이송 및 안내 : 4건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 고
1	- 제목 :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자 배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 조사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로00길 00, 000동 0000호 000(4일)	* 처리내용 :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2	- 제목 : 공영(노상)주차장 부당 징수 주차 요금 환불 조치 등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2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로 00-0 (00동 000), 000 외 1 (3일)	* 처리내용 : 붙임 2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3	- 제목 : 차고지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인접 농경지 피해 구제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3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로00길 0, 000동 000호 (00동, (00동, 0000000), 000 외 3(7일)	* 처리내용 : 붙임 3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연번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내용	비 고
4	- 제목 : 빈집 등 정비 요구 * 민원내용 : 붙임 4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 신청인 : 대구 북구 00로00길 00, 0동 000호, 000(2일)	* 처리내용 : 붙임 4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참조	
이	하	여	백

< 붙임 1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민원 번호 : 2025-제0호, 민원 제목 :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자 배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 조사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로00길 00, 000동 0000호
피신청인	없 음	접수일	2025. 0. 0.

1. 신청 원인

- 신청인은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이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모집을 공고한 사항 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배치되어 사무보조 업무 및 행정서비스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행정업무지원사업’의 분야에 지원하여 선발(선정)된 바 있으나,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은 위 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연 캠페인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의견을 조회(유선으로 의견 조회)한 것은 부당하니 위 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된 바 없고, 신청인이 지원한 사실이 없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토록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이 인력의 배치 장소를 달리한 사항에 대한 그 적정성 여부 등(허위 공고의 해당 여부 및 인력 배치에 따른 비리 여부)을 조사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조 제3호에 따른 “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적용 범위)를 대구 북구의 본청과 직속기관⁵⁾ 및 관할 사업소⁶⁾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은 대구 북구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대구북구시니어클럽)이 위 ‘1’ 과 같이 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신청인이 지원한 사실이 없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의 배치 장소를 달리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이는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인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님.

※ 대구 북구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 북구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아 위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 기관임.

☞ 우리 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모집을 안내(2024. 11. 25. ~ 12. 11.)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지원하였다는 ‘공공행정업무지원사업’ 분야의 자료(고충민원 신청서에 첨부)는 대구북구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안내한 자료임.

참 고

복지정책과장은 대구 북구 공고 제2024-1718호(2024. 11. 25.)에 따라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를 하였고, 모집 공고한 사업 분야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중 ‘노인역량활용사업’ 에 속한 ‘공공기관 업무지원’ 의 활동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운전면허시험장 내 민원 응대 및 사무보조 업무 등, 북구 보건소 민원 응대 및 금연시설 계도, 근로복지공단 대구 병원 내 입원환자 편의 서비스 및 환경 정리, 북부도서관 내 자료정리 및 돌봄 등 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임.

5) 보건소 · 보건지소 등(「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1절 참조)

6) 건설사업소, 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 북구청 산하의 사업소는 없음

다. 따라서 조례 제17조 제1항 제6호(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가 조사·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구북구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한 복지정책과장에게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토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민원 서류를 이송함이 타당함.

3. 결론(조치의견) : 안내 및 이송

- 신청인에게 위 ‘2’의 내용을 안내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토록 민원서류를 이송(처리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토록 통보)하고자 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0. 0.

< 붙임 2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민원 번호 : 2025-제0호, 민원 제목 : 공영(노상)주차장 부당 징수 주차 요금 환불 조치 등 요구		
신 청 인	000 외 1	주 소	대구 북구 00로 00-0 (00동 000)
피신청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접수일	2025. 0. 0.

1. 신청 원인

- 신청인은 2025. 7. 28. 11:30경 3공단로1 공영주차장(노원네거리 서편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공영주차장’ 이라 함)에 000누0000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 이라 함)을 주차한 후 인근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던 중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받는 징수원으로부터 주차 요금 4,000원의 송금(계좌 이체)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고, 이에 신청인이 과도한 주차 요금의 징수에 이의를 제기하자 징수원은 당초 문자를 발송한 금액에서 2,000원이 감액된 금액(2,000원)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같은 날 그 징수원이 요구한 금액(2,000원)을 송금한 바 있으나,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이용 안내 표지판에 따르면,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주차단위구획당 10분마다 350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안내)된 사항과 달리 이 민원 차량을 25분간 주차한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주차 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 요금을 환불(1,000원) 조치하고, 향후 주차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조 제3호에 따른 “ ‘고충민원’이란 복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이와 관련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적용 범위)를 대구 복구의 본청과 직속기관⁷⁾ 및 관할 사업소⁸⁾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1’과 같이 제출한 고충민원은 대구광역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설치)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⁹⁾(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이 민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가 이 민원 공영주차장에 이 민원 차량을 주차한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징수한 주차 요금의 환불 조치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 사안임.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 : 아래 참조)

□ 이 민원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

주차장	급지	구획	운영시간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3공단로1 공영주차장	2(지)	32	07:00~16:00 토·일 무료	노원네거리 서편도로 (팔달로 105)	1577-6446 (통합관제센터)	민 간 위탁운영

※ (지): 지역여건할인/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2급지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 요금은 주차단위구획¹⁰⁾당 10분마다 350원을 받도록 규정

라. 즉, 위 ‘다’와 같이 대구광역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민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행한 사실행위(주차 요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7) 보건소·보건지소 등(「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대구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1절 참조)

8) 건설사업소, 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 복구청 산하의 사업소는 없음

9) 대구광역시장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치(설립)

10)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함.(「주차장법」 제2조 제7호)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속하지 않음.

마. 따라서 조례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민원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관리공단에서 조사하여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이송한 고충 민원의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토록 통보함이 타당함.

3. 결론(조치의견) : 안내 및 이송

- 신청인에게 위 ‘2’의 내용을 안내하고, 위 ‘2의 마’와 같이 신청인의 고충 민원을 관리공단에 이송하고자 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 0. 0.

< 붙임 3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2025-제0호, 차고지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인접 농경지 피해 구제 요구		
신 청 인	000 외 0	주 소	대구 북구 00로 00길 0, 00동 000호 (00동, 00000000)
피신청인	0000과장	접수일	2025. 00. 00.

1. 신청 원인

-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0000. 0.경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대구 북구 00동 000-0 일원의 토지(이하 ‘이 민원 차고지’ 라 함)에 (주) 0000 차고¹¹⁾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민원 차고지를 약 0m를 성토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이 민원 차고지에 인접(북측 위치)한 신청인(들)의 소유 농지(같은 동 000 및 같은 동 000 일원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하 ‘이 민원 농지’ 라 함)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차고지와 이 민원 농지의 경계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주) 0000의 건축 관계자가 신청인(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약속한 사항과 달리 (주) 0000이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이 민원 차고지를 이 민원 농지보다 약 00~00cm 높게 조성한 후 약 0년 전부터 이 민원 차고지를 사용함에 따라 배수가 없는 이 민원 농지가 우천 시 침수될 뿐만 아니라 경사지로 형성된 이 민원 농지의 상부 토사가 하부로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 0000에서 신청인(들)과의 약속 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차고지로 인해 이 민원 농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0000으로 하여금 이 민원 농지를 이 민원

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버스 차고)를 말함.

차고지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성토하고, 아울러 이 민원 차고지와 이 민원 농지의 경계 부분에 조속히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은 이 민원 차고지에 대한 개발행위 당시 (주) 0000의 건축 관계자가 이 민원 농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차고지와 이 민원 농지의 경계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신청인(들)에게 약속한 사항과 달리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이 민원 차고지의 조성을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함에 따라 배수호가 없는 이 민원 농지가 우천 시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 0000에서 신청인(들)과의 약속 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주) 0000으로 하여금 조속히 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임.

다. 신청인(들)이 위 ‘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고충민원은 같은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임에 따라 같은 조례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민원 차고지의 개발행위허가(협의)를 한 0000과에서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이송한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회신토록 통보함이 타당함.

3. 결론(조치의견) : 안내 및 이송

○ 위 ‘3’의 사항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회신)하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고충

민원은 이 민원 차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협의)를 한 0000과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토록 이송하고자 함.

※ 이송한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토록 조치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 붙임 4 >

고충민원 조사결과서			
민원표시	2025-제0호, 빈집 등 정비 요구		
신 청 인	0 0 0	주 소	대구 북구 00로00길 00, 0동 000호
피신청인	0000과장	접수일	2025. 00. 00.

1. 신청 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000동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노후화된 빈집이 상당히 많이 소재하고 있으나, 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빈집이 붕괴(담장 포함)될 우려가 있고, 아울러 빈집의 울타리 내 무성하게 자란 지장 수목으로 인해 빈집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구청에 빈집의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에도 구청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빈집의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담장 포함)을 정비(철거 및 지장 수목의 벌목 또는 가지치기 등)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위 ‘1’ 과 같은 내용으로 0000과에 민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0000과에 빈집에 대한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빈집의 신고에 따른 소극적인 처분(부작위¹²⁾)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보여짐.

다. 한편, 신청인이 빈집 주변의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000동에 소재하는 빈집의 실태를 조사한 후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고충민원은 신청인이 해당 빈집의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그 빈집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제출하여 빈집의 실태조사 권한이 없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음.

라.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으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0000과에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토록 이송함이 타당함.

※ 신청인에게 빈집의 소재지를 확인(유선 등)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0000과에 통보할 계획

3. 결론(조치의견) : 안내 및 이송

- 위 ‘3’ 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회신)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은 빈집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0000과에서 조사하여 처리토록 이송하고자 함.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

12)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3. 고충민원 상담실적

□ 상담유형 ☞ 단순상담 : 54건

- 상담 신청인들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기피하여 상담자를 특정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1	1. 6.	- 붙임 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2	1. 8.	- 붙임 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 답변요지 참조	환 경 관리과 (단순상담)	
3	1. 16.	- 붙임 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 답변요지 참조	건설과 (단순상담)	
4	1. 21.	- 붙임 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 답변요지 참조	복 지 정책과 (단순상담)	
5	2. 3.	- 붙임 5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 답변요지 참조	환 경 관리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6	2. 4.	- 붙임 6 상담요지 참조	- 붙임 6 답변요지 참조	환 경 관리과 (단순상담)	
7	2. 5.	- 붙임 7 상담요지 참조	- 붙임 7 답변요지 참조	민 원 여권과 (단순상담)	
8	2. 10.	- 붙임 8 상담요지 참조	- 붙임 8 답변요지 참조	복 지 정책과 (단순상담)	
9	2. 12.	- 붙임 9 상담요지 참조	- 붙임 9 답변요지 참조	건설과 (단순상담)	
10	2. 17.	- 붙임 10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0 답변요지 참조	공 원 녹지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11	2. 19.	- 붙임 1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1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12	2. 21.	- 붙임 1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2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13	2. 24.	- 붙임 1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3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14	2. 25.	- 붙임 1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4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15	2. 27	- 붙임 15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5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16	3. 4.	- 붙임 16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6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17	3. 5	- 붙임 17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7 답변요지 참조	교통과 (단순상담)	
18	3. 5	- 붙임 18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8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19	3. 6	- 붙임 19 상담요지 참조	- 붙임 19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20	3. 6	- 붙임 20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0 답변요지 참조	행 정 지원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21	3. 7.	- 붙임 2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1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22	3. 7.	- 붙임 2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2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23	5. 2.	- 붙임 2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3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24	7. 15.	- 붙임 2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4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25	7. 15.	- 붙임 25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5 답변요지 참조	재무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26	7. 17.	- 붙임 26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6 답변요지 참조	민 생 경제과 (단순상담)	
27	7. 18.	- 붙임 27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7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28	7. 23.	- 붙임 28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8 답변요지 참조	환 경 관리과 (단순상담)	
29	7. 29.	- 붙임 29 상담요지 참조	- 붙임 29 답변요지 참조	환 경 관리과 (단순상담)	
30	7. 29.	- 붙임 30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0 답변요지 참조	민 생 경제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31	8. 1.	- 붙임 3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1 답변요지 참조	교통과 (단순상담)	
32	8. 4.	- 붙임 3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2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33	8. 5.	- 붙임 3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3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34	8. 6.	- 붙임 3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4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35	8. 6.	- 붙임 35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5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36	8. 11.	- 붙임 36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6 답변요지 참조	교통과 (단순상담)	
37	8. 12.	- 붙임 37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7 답변요지 참조	기 타	
38	8. 14.	- 붙임 38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8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39	8. 19.	- 붙임 39 상담요지 참조	- 붙임 39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40	8. 27.	- 붙임 40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0 답변요지 참조	교통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41	9. 1.	- 붙임 4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1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42	9. 12.	- 붙임 4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2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43	9. 23.	- 붙임 4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3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44	9. 24.	- 붙임 4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4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45	10. 14.	- 붙임 45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5 답변요지 참조	도 시 행정과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46	10. 15.	- 붙임 46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6 답변요지 참조	건 축 주택과 (단순상담)	
47	10. 24.	- 붙임 47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7 답변요지 참조	건설과 (단순상담)	
48	10. 27	- 붙임 48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8 답변요지 참조	각실과 공 통 (단순상담)	
49	11. 4.	- 붙임 49 상담요지 참조	- 붙임 49 답변요지 참조	각실과 공 통 (단순상담)	
50	11. 4.	- 붙임 50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0 답변요지 참조	각실과 공 통 (단순상담)	

연번	상담일	상담내용(신청인)	상담결과	담당과 (유형)	비 고
51	11. 13.	- 붙임 51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1 답변요지 참조	각실과 공 통 (단순상담)	
52	11. 20.	- 붙임 52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2 답변요지 참조	각실과 공 통 (단순상담)	
53	12. 3.	- 붙임 53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3 답변요지 참조	건설과 (단순상담)	
54	12. 24.	- 붙임 54 상담요지 참조	- 붙임 54 답변요지 참조	건설과 (단순상담)	
	이	하	여	백	

< 붙임 1 >

□ 상담요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매점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물품을 저장하는 용도(물품저장용)의 가설건축물을 천막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관음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부지 내에 천막으로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건축된 부지 외 인근 부지(인접 대지)에도 천막으로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아닌 소매점의 경우에는 천막으로 물품저장용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④ (생략)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 (생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16. (생략)

< 붙임 2 >

□ 상담요지

- 윗집 세대에 사육 중인 애완용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 답변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나, 애완용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붙임 3 >

□ 상담요지

- 신청인이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의 보도를 통행하던 중 돌출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2개)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입은 부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대구 서구 비산동 주민)

□ 답변요지

-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구 북구에서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조물 손해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만약, 대구 북구에서 소유·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신청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구 북구 건설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배상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아 배상에 관한 청구를 신청하기 바람.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붙임 4 >

□ 상담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¹³⁾ 인증 대상을 정한 법적 근거는? (대구 북구 산격동 주민)

□ 답변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정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13) 장애와 비장애인,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 붙임 5 >

□ 상담요지

- 주거지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시간대별 생활소음의 규제 기준은? (대구 북구 읍내동 주민)

□ 답변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라 주거지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시간대별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아침(05:00~07:00) 및 저녁(18:00~22:00) 60dB(A) 이하, 주간(07:00~18:00) 65dB(A) 이하, 야간(22:00~05:00) 50dB(A)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장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② (생략)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이하 생략)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생략)	-	-	-	-

비고 : (생략)

2. (생략)

< 붙임 6 >

□ 상담요지

- 교회 예배 시 실내(예배당)에서 나오는 육성에 의한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3동 주민)

□ 답변요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제1호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공장과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의 소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교회 예배 시 실내(예배당)에서 나오는 육성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확성기(스피커 포함)에 의해 소음이 유발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제1호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소음원이 확성기인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 (생략)

2. 2.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략)

< 붙임 7 >

□ 상담요지

- 민원의 처리 기간이 '즉시'인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의 접수와 동시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복현1동 주민)

□ 답변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붙임 8 >

□ 상담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인증의 신청 시기는?
(대구 북구 참산2동 주민)

□ 답변요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본 인증은 개별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하는 것이고, 예비인증은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인증의 신청)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⑥ (생략)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②~⑤ (생략)

< 붙임 9 >

□ 상담요지

- 도로의 관리 하자(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차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 답변요지

- 포트홀¹⁴⁾에 의해 차량의 피해가 발생한 도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된 도로일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배상 청구는 사고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또는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피해당사자가 직접 건설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배상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아 배상에 관한 청구를 신청하기 바람.
- *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도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신청
 - ☞ 배상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고등검찰청 국가소송팀(전화 : 053-740-4672)에 직접 문의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생략)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14) 포트홀(Pothole)이란 도로가 파손되어 구멍이 파인 곳

□ 상담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호에 따라 경관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가로지르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호동 주민)

□ 답변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3 관련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4.~8. (생략)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5. 2. 10., 2017. 10. 17., 2018. 1. 9.>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이하 생략)
- 2.~3의2. (생략)
-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垓)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 4.~10. (생략)

< 붙임 11 >

□ 상담요지

- 토지의 일부가 완충녹지¹⁵⁾에 저촉되어 있을 경우 그 완충녹지에 저촉된 토지의 일부를 건축물의 건축 시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관음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의 면적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시 해당 대지의 면적은 완충녹지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의한 녹지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10. (생략)

②~⑥(생략)

15)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 상담요지

- 경관녹지에 저축된 부분의 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대구 북구 읍내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에 저축된 토지에는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붙임 13 >

□ 상담요지

- 공동주택(아파트)의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대구 북구 침산1동 주민)

□ 답변요지

- 공동주택(아파트)의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제21호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④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20. (생략)	-	-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5년

< 붙임 14 >

□ 상담요지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¹⁶⁾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⑭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생략)

2. (생략)

②~⑬ (생략)

16)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상담요지

-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구 북구 복현1동 주민)

□ 답변요지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¹⁷⁾ 이하 등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점은 동일하나, 그 차이점은 개축은 자의에 의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19. (생략)

17) 규모란 연면적, 최고 층수, 최고 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임.

< 붙임 16 >

□ 상담요지

- 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의 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한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3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허가된 사항과 같이 건축행정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 즉,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에 종속되는 처분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 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¹⁸⁾ 중 ‘확인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해보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허가권자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 참고로 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인접주택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이후에도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가능하고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18) 건축허가 처분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건축허가에 종속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이 정한 효과를 확인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

< 붙임 17 >

□ 상담요지

-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¹⁹⁾의 바닥을 반드시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주민)

□ 답변요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바닥을 반드시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19)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상담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주민)

□ 답변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0. 1. 28. 구(舊)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 제도로 전환한 것임.

*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한 후 2003. 1. 1.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종전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만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의 제도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 붙임 19 >

□ 상담요지

-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에 「민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4동 주민)

□ 답변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공로(公路)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주위(주변)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의 도로²⁰⁾가 없는 토지에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함.

*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로가 확보되어야 가능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담요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 (대구 북구 동천동 주민)

□ **답변요지**

-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상담요지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축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국우동 주민)

□ 답변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등을 할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하나,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²¹⁾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축조)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4 제1항 참조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생략)

□ 상담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할 경우 그 존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대구 북구 구암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1호 가목 참조)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존치기간은 3년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함. (같은 조례 제17조의4 제2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 나. (생략)
- 2.~3. (생략)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건물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2회

< 붙임 23 >

□ 상담요지

-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고 싶을 경우 2년을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답변요지

-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2년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음.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을 경우 최소 2년간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상담요지

- 신축 중인 건축물이 신청인의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은? (대구 북구 침산2동 주민)

□ 답변요지

-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신축 중인 건축물이 신청인의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신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 사항의 시정 시까지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⑦ (생략)

□ 상담요지

- 국유재산의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금액 및 변상금의 징수 기간은? (대구 북구 칠성동 주민)

□ 답변요지

-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1.~2. (생략)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⑤ (생략)

□ 상담요지

- 지목이 전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꽃을 재배·판매하는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연경동 주민)

□ 답변요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전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꽃을 재배·판매하는 행위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2.~8.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
 - 나.~마. (생략)

□ 상담요지

-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3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행은 할 수 없고 자동차 통행만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님.
-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불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21. (생략)

② (생략)

□ 상담요지

-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주민)

□ 답변요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지 제4호의 지역 및 장소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2.~5. (생략)
- ②~⑤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하 생략)

- 1.~7. (생략)
- ② (생략)

【별표 1】(개정 2019. 9. 20.)

가축사육 제한지역(제4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주거지역
 - 나. 상업지역
 - 다. 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3.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 상담요지

-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를 키울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주민)

□ 답변요지

-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 는 가축사육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육(飼育)의 제한을 강제할 수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

② (생략)

□ 상담요지

- 농지(지목: 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에 꽃을 재배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연경동 주민)

□ 답변요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할 수 있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2.~8.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
 - 나.~마. (생략)

□ 상담요지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의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복현2동 주민)

□ 답변요지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의 장소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요건에 부합되게 구청에 신고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첨부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상담요지

- 인접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로 인해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및 재정 신청을 할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참고로 조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하는 것이고, 재정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하는 것임.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7. (생략)

②~③ 삭제 <2014. 5. 28.>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 상담요지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서변동 주민)

□ 답변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3에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아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③ (생략)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생략)

②~⑥ (생략)

□ 상담요지

- 준주거지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대구 북구 국우동 주민)

□ 답변요지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 제6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²²⁾은 60% 이하, 용적률²³⁾은 400% 이하(같은 조례 제80조 제1항 제6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1.~5. (생략)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7.~21. (생략)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1.~5. (생략)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7.~21. (생략)
- ②~⑨ (생략)

22)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건축법」 제55조)

23)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건축법」 제56조)

□ 상담요지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의 범위는? (대구 북구 서변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 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은 200㎡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에 적법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3. (생략)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생략)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3. (생략)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생략)

□ 상담요지

-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승용자동차를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²⁴⁾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은? (대구 북구 태전1동 주민)

□ 답변요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본문 관련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원(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하생략)

⑤~⑨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5. (생략)	-	-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²⁵⁾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의2.~20. (생략)	-	-

24)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하 생략) 1.~5. (생략)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8. (생략)

25)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교 2)

< 붙임 37 >

□ 상담요지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인도(引渡)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여 사용(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구 북구 읍내동 주민)

□ 답변요지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및 건축물의 인도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명도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

□ 상담요지

-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신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구 북구 복현1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기속행위에 해당됨.
- 따라서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 제기를 이유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⑥ (생략)

□ 상담요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생성)할 수 방안이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호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물대장의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없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작성)이 불가함.
-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을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한 후 구청장의 추인²⁶⁾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될 경우 건축물대장을 생성(작성)할 수 있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2025. 7. 31.>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0. (생략)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3. (생략)

②~⑤ (생략)

26)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 붙임 40 >

□ 상담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으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유선(전화)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침산1동 주민)

□ 답변요지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유선에 의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효력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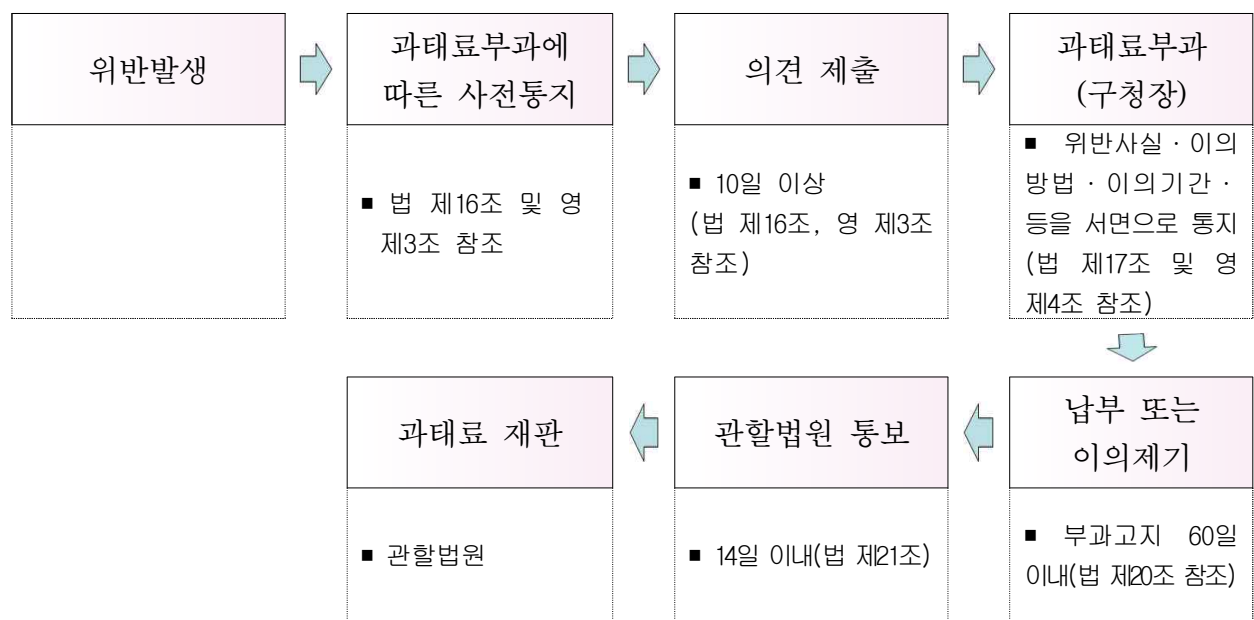
☞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참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

*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진행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



□ 상담요지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려고 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인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인지 여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8조2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에 해당됨.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단서 참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생략)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다.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⑨ (생략)

「대구광역시 복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1.10.>

[전문개정 2023.12.29.]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

□ 상담요지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옥상)이 누수되는 하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복현2동 주민)

□ 답변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용부분의 손상 또는 누수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세대로 확산될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고 방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개인이 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이 경우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 약속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면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한 증빙 자료, 하자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존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청구 등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17. (생략)

③~⑥ (생략)

□ 상담요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호동 주민)

□ 답변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임도(林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서 등을 지참하여 도시행정과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3의2. (생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9. (생략)

②~⑪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2. (생략)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18. (생략)

□ 상담요지

-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욕실)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답변요지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사실(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만약,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을 경우 이는 이해당사자(윗층 및 아래층 세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원칙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세대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윗층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아래층 세대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
- ☞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의 소송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 (이 경우 윗층 세대의 패소가 예상)

□ 상담요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인 도로의 설치 방법은?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주민)

□ 답변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종류 제2호(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나)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제2호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략)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마. (생략)

1의2.~9.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생략)	-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 한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 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설치하는 제설시설(개발제한 구역에 제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라.~하. (생략)	-
3.~5. (생략)	-

□ 상담요지

-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를 초과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침산2동 주민)

□ 답변요지

-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및 제8호에 따라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축조할 수 있음.
- 그러나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를 초과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됨.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11. (생략)

② ~⑥ (생략)

□ 상담요지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관련 별표 3(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비고 제2호에서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유? (대구 북구 구암동 주민)

□ 답변요지

- 일반적으로 도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됨에 따라 그 공시지가가 도로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른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도로점용의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금액의 단위: 원)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11. (생략)	-	-				

비 고

1. (생략)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9. (생략)

□ 상담요지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제출되는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주민)

□ 답변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담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시 유선(전화)에 의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태전1동 주민)

□ 답변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구술(말)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명날인 등을 할 수 없는 유선에 의한 청구는 불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 6. 22.>

□ 상담요지

-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의 산정 시 공휴일의 경우에도 처리 기간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4동 주민)

□ 답변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의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되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담요지

- 고충민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대구 북구 산격4동 주민)

□ 답변요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생략)

□ 상담요지

- 행정청이 허가를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구 북구 침산3동 주민)

□ 답변요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위 두 가지의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될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는 불가능하나 그 청구한 행정심판은 각하 처리됨.
-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청의 통지(우편송달 등),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담요지

- 현황 도로와 사도(私道)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주민)

□ 답변요지

- 현황 도로(관습상 도로)란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 등이 아닌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地目)의 여부와 관계없음.
- 반면, 사도는 「도로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도로는 아니나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사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도의 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임.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4. (생략)

④~⑤ (생략)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 상담요지

- 사도(私道)를 개설할 경우 그 사도를 개설한 자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사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 북구 동변동 주민)

□ 답변요지

- 「사도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되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도개설자는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음.

「사도법」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기타 활동실적

1. 제도개선 권고 : 1건

연번	제 목	제도개선 내용	수용 여부	비 고
1	노상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불임 1 제도개선 과제 검토의견서 참조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을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교통과 협의(2025. 8. 18.) ※ 위 제도개선 안에 대한 수용 의견 제출 【교통과-82964(2025. 8. 20.)호 참조】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을 2026. 4. 30.까지 개정 하도록 교통과에 제도개선 권고 (2025. 8. 22.)	수용 (제도개선 권고)	

【붙임 1】

제도개선 과제 검토의견서

과 제 명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제도개선(안) 요 지	☐ 현 황 ○ 별지 1 검토의견서 현황 참조 ☐ 문 제 점 ○ 별지 1 검토의견서 문제점 참조 ☐ 개선방안 ○ 별지 1 검토의견서 개선 방안 참조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2(도로과 위임 사무 1의 가 및 나)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해 당 과 검 토 의 건	☐ 수용 ☐ 수정 수용 ☐ 불수용
이 유	※ 작성 시 참고사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1. 수용의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명시 2. 수정 수용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불수용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담당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 교통과 000(내선 : 0000)

검토의견서

□ 현 황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개정)이 시급

가. 폭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의 위임²⁷⁾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조례 제7조 본문 후단)

- 폭 20m 이상 도로에 시장²⁸⁾이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를 권한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²⁹⁾되어 구청장이 폭 20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가 불가능

※ 폭 20m 이상의 도로에는 시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관리하거나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단³⁰⁾에서 관리 중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일부의 노상주차장은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북구 소재 3공단로1 공영주차장 등)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21조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³¹⁾ 참조

나.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지 않은 조례를 운용 중

27) 위임이란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권한 위임한 사항을 말하는 것임.

28) 대구광역시장을 말함.

29) 2006. 12. 29. 대구광역시조례 제3829호에 따라 시장이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를 권한 위임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이 삭제

30)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말하는 것임.

3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른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도로과 일련번호 1의 위임사무명 가 및 나 참조

-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에 정한 후 그 기준 등에 충족 시 예외적 설치를 허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 반면, 조례 제7조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

-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참조

□ 문제점

가. 폭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오해한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

나.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노상주차장의 설치 여부를 판단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노상주차장의 설치로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는 집단 민원의 제기 시 이에 대처하기 곤란

※ 너비 6m 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대부분 너비 4m)에 노상주차장의 설치 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

☞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형식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너비 2.0m 이상×길이 6.0m 이상)을 설치할 경우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유효 너비(약 4m)에 미달

다.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정하지 않아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로부터의 민원 발생이 예상

- 2014. 2.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2015. 2. 7.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

□ 개선방안

- 조례 운용에 따른 행정청의 신뢰 제고 및 민원 이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되게 조속히 조례를 개정

가. 폭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 구청장은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 조례에 도로의 폭과 너비로 규정된 용어를 도로의 너비로 일원화

나.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운용

-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노상주차장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
-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

※ 재난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진입에 따른 지장 유무 등을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 부합되게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m 미만을 너비 6m 미만인 도로로 개정

다.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조례에 신설

※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

- 조례 개정(안) : 【별지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별지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1. <u>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교통 소통 및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2. <u>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③ <u>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제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u>

현행	개정안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붙임 2】

■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다. (생략)

2.~13. (생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④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21.8.27>

1.~2. (생략)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9.]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략)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 2022. 7. 29.] [대구광역시조례 제5802호, 2022. 7. 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7. (생략)

8.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9.~15. (생략)

② (생략)

제18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316호, 2025. 7. 10., 일부개정]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19.10.10., 2024.7.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3.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018.2.28., 2020.10.5.>

1.~5. 삭제 <2006.12.29.>

② (생략)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3829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2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829호)

1.~5.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② (생략)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3732호, 2005. 9. 30., 일부개정]

제2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5.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② (생략)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3652호, 2004. 7. 12., 일부개정]

제2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3.~5. (생략)

② (생략)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5.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323호, 2025. 7. 10., 일부개정]

제2조(위임사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4.11., 2021.12.30.>

② (생략)

[별표2] <개정 2025.7.10.>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교통정책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가산금 부과·징수 다. 부담금 대장 기록·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9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1항	
	2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인력·영상(다만, 구에서 설치한 무인감시 카메라에 한한다)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신설 2018. 10.30.>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신설 2018.10.30.>	
도 로 과	1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 한다) 가. 폭 20미터 미만 도로공사의 시행 나. 도로의 유지관리 다.~타. (생략)	「도로법」 제23조 같은 법 제23조 -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1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706호, 2024. 4. 11., 일부개정]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10.1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구에 내어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7.11.)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 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7.1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의결번호 2025-제도개선 제1호

의 결 명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해당부서 도시국 교통과

의 결 일 2025. 8. 21.

주 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과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이하 “대구시 조례”라 한다) 제21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아울러 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2026. 4. 30.까지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³²⁾은 제15조의2에 따른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5. 삭제

32) 대구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같다.

<2006. 12. 29.>”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4조 제2항은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7조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반면, 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실은 없다.

라. 피신청인이 위 ‘다’와 같이 운용 중인 조례 제7조는 ①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구(舊) 대구시 조례(2004. 7. 12. 대구광역시조례 3652호에 따라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2006. 12. 29. 삭제되어 시장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음에도 시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흠이 있는 조례를 운용 중인 점, ②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의 권한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오해한 민원인이 노상주차장의 운영자가 징수한 주차 요금 등에 관한 민원을 구청에 제

기함에 따른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점, ③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너비 6m 미만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공무원이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경우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점, ④ 위 ③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지연되어 재산 등의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조례의 흠으로 피신청인이 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2014. 2. 6. 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그 설치 비율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의 설치 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부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은 2026. 4. 30.까지 합리

적인 내용으로 조례 제7조 등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8월 21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용)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1. <u>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교통 소통 및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2. <u>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③ <u>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제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u>

현행	개정안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